

# 복지이슈 FOCUS

현상공감 경기복지재단

제4호  
2021-04

2021. 4.

## 소비자신용법의 제정 의미와 경기도의 대응과제

석희정 연구위원(seokhj@ggwf.or.kr)  
고은새 연구원(unsai624@ggwf.or.kr)

### 목차

- I. 소비자신용법(안)의 추진배경
- II. 현행 소비자신용 관련 문제점
- III. 소비자신용법안의 개편 방향과 주요내용
- IV. 경기도의 대응과제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연구진

연구책임 |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고은새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x : 031-898-5935 E-mail : seokhj@ggwf.or.kr

### ■ 소비자신용법(안)의 추진배경

- 상당수 개인채무자들이 적기에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과도한 연체 이자와 추심 압박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금융위원회, 2020)
- 대출의 전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추심자, 개인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 장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신용법’의 법제화 논의와 구체적 방안 강구

### ■ 현행 소비자신용 관련 문제점

- 연체채권 회수 불가능에도 상각채권에 대한 이자부과와 추심행위 관행 지속
-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에 대한 관심 부족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관리 및 지원체계 미흡

### ■ 소비자신용법안의 개편 방향과 주요내용

-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와 연체가산이자 제한에 관한 신규 규율 마련
- 추심규제강화와 추심위탁 내부기준제도 및 금융기관의 채권양도내부제도 도입
-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 소멸시효단계에서 소멸시효완성과 소멸시효중단에 대한 규정 도입

### ■ 경기도의 대응과제

- 첫째, 향후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따른 경기도 관련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둘째, 서민금융복지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 협상력 강화
- 셋째,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채무조정 지원체계 재정비

## I 소비자신용법(안)의 추진배경

- 20세기 초중반 산업분야의 대량생산체제 도입과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서구사회에서는 소비자금융과 신용대출이 점진적으로 확대
  - 20세기 대량생산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금융시장에 대부와 할부 등 소비자금융의 확산과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재건 과정에서 신용대출까지 추가, 확대되면서 그 어느 시기보다 가계신용이 증가함
  -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로 개인 연체 증가와 과도한 추심이 사회문제로 거론되면서 결국 1970년 전후 미국, 영국에서 포괄적 소비자신용 법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유럽 대륙도 소비자신용법('90)을 속속 마련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발생으로 개인채무자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개인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 이후 가계금융의 급격한 팽창과 2003년 카드사태 등을 거치면서 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세 가지 방향으로 도입
  - 우선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대출 모집과 계약 체결을 규율하는 「대부업법」('02)을 제정하고, 한 때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07) 부활, 매입추심업을 규율·감독 대상에 포함('09)시킴
  - 다음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0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04)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구축함
  - 마지막으로 추심자와 채무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추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09)을 제정
  - 이처럼 정부는 불법적인 채권추심('06)뿐 아니라 채권매각('17)에서도 채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악질적 추심 질서 개선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임

- 그럼에도 상당수 개인채무자들이 적기에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과도한 연체 이자와 추심 압박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금융위원회, 2020)
  - 가장 큰 문제는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 채권 금융기관과 직접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재
  - 또한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등 특정한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규율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 증진에도 한계
  -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추심(추심위탁·채권매각)이 보편화되어 고객 보호에 소홀해지고 원금 회수에만 치중한 추심 관행 악순환 형성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정책 수단에 불과함
- 이에 따라 대출의 전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추심자, 개인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 장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신용법’의 법제화 논의와 구체적 방안 강구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출범, 1년여 간 논의를 거쳐 기존 채권자 중심의 추심 및 채권매각 관행을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함(금융위원회, 2020)
  - 「소비자신용법안」의 기본 방향은 기존 채권자 중심의 추심 및 채권매각 관행을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함으로써 고객 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 이 법안은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여 금융업권에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율하는 것에 목표를 둠

## II 현행 소비자신용 관련 문제점

### ■ 개인채무자와 채권자(금융기관) 간 소비자신용<sup>1</sup>의 문제점

- 개인채권에 대한 채무자와 채권자 간 소비자신용의 통상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을 거침
  - 은행이나 대부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를 상대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정상적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게 됨
  - 하지만 연체가 장기화되는 등 정상적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추심과 함께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됨
  - 이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추심 업무를 별도의 회사에 위탁하거나 해당 채권을 매각하기도 함. 채권을 매입한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은 추심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채무가 상환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함
-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에도 상각채권<sup>2</sup>에 대한 이자부과와 추심행위 관행
  - 문제는 채권금융회사가 시효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는 반면 연장할 경우 계속 추심을 통한 회수작업이 진행됨
  - 한편 대출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상각하고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며 지속적인 이자부과와 추심행위는 멈추지 않는 관행을 반복해옴
  - 과도한 이자부과와 추심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은 잠적이나 도피 등으로 채권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활동마저 중단하게 되어 국가경제에도 사회적 비용낭비를 초래함
  - 물론 우리나라도 소비자신용을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만, 기존 법령은 대부 과정과 추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에 관한 규율이 부재함
  - 또한 소비자들의 채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전에 조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제가 악화된 뒤에야 대처하는 한계를 드러냄

1 소비자신용이란 대부계약에 다른 금전대부(카드할부 포함), 지급보증·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채권양수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금융업 영위과정에서 보유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함(금융위원회, 2020)

2 상각채권이란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더이상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 ■ 현행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

### ○ 채권자 중심의 사적 채무조정체계

- 첫째, 사적채무조정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집중됨에 따라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연체자,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 접근에 관심이 부족하고 실제 수행 역할도 미흡
- 둘째, 현행 체제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는 다른 관점에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선택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운영 및 자원 등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유인구조가 채권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음
- 셋째, 2019년 채무조정 개편방안에서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 지원체계를 마련했지만, 근본적 제도운영 및 자원의 변화 없이 운영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

- 현행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장기연체자 일수록 감면율이 상승하는 역기능 발생, 이로 인해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건수 및 구조가 확대되어 신용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
- 또한 원금감면 등을 금융기관의 정해진 산식에 따라 획일적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소득수준,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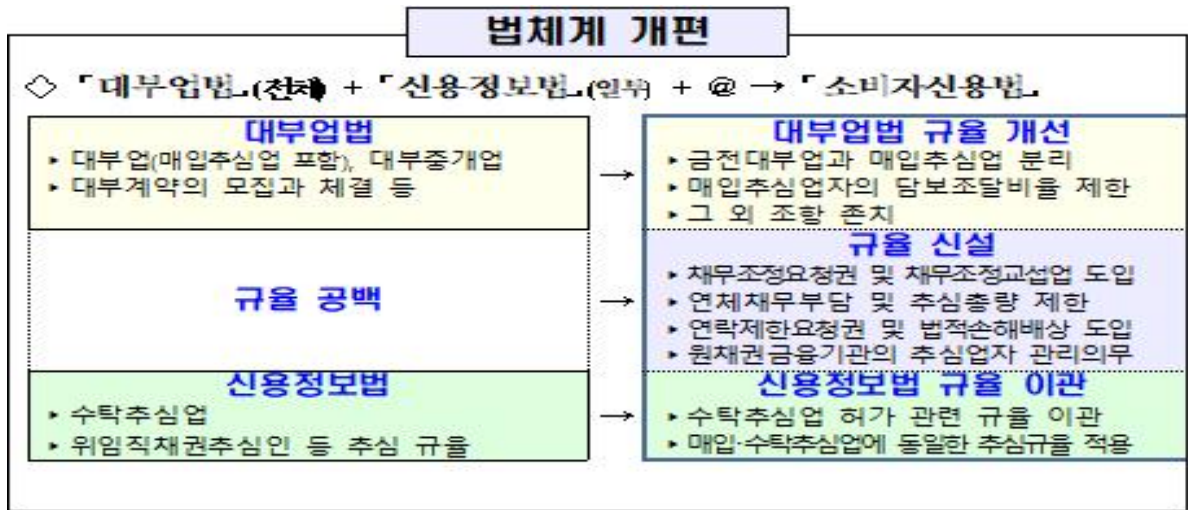
### ○ 채무자의 신용회복 관리 및 지원체계의 미흡

- 현행 채무조정제도는 공적, 사적 채무조정을 막론하고 원리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 역할에만 집중되어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자의 신용회복 관리 및 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함
- 또한 채무조정자의 상당수는 대부업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여 생활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조정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대부업 대출을 갚아야 하는 열악한 현실에 직면
- 채무조정 후 상담기능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채무자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한국금융연구원, 2020)

## Ⅳ 소비자신용법안의 개편 방향과 주요내용

-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 전체와 「신용정보법」 일부를 포함하고 그동안 채무조정과 추심과 관련된 규율 공백에 대응하는 신규 규율들을 신설함

〈그림 1〉 소비자신용법의 법체계 개편



자료: 금융위원회(2020.9.), 「소비자신용법안」 발표자료

- 소비자신용법안은 소비자신용 과정별로 규제내용을 대부단계 → 연체단계 → 위탁추심, 매각추심단계 → 채무조정단계 → 소멸시효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따라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문체계는 〈표 1〉에 제시함

〈표 1〉 소비자신용법 조문체계

항목	조문(§)	내용	주요 변경·신설 사항	조문이력	
총칙	1~4	목적·정의·적용범위·타법관계	소비자신용 권리·의무 명확화	신설	
소비자신용업	인가·등록	5~8 9·10 11~13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영업양수도 대부·대부중개·매입추심·교섭업 등록 등록업의 갱신·등록수수료·교육	-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	신정 대부·신설 대부
	소유·지배	14·15 16·17	임직원 자격요건·업무총괄사용인 대주주 변경승인·거래제한	- -	대부·신정 대부·신정
	업무	18	다른 업무의 수행 제한	대부·중개업간 겸영만 허용	대부·신정
		19	총자산한도(레버리지) 제한	매입추심업 담보한도 신설	대부
		20·21	상호·이용자보호기준	-	대부·신정
채권 생성	대부 계약	22·23 24 25~28	대부계약 체결방법·과잉대부금지 이자율제한 광고·대부중개제한	- - -	대부 대부 대부
	연체 처리	29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	10일전 통지→채무조정신청가능	신설
		30	연체이자 부과제한	당초 만기미도래 원금에 부과금지	신설



항목	조문(§)	내 용	주요 변경·신설 사항	조문이력	
연체 채권 관리	채권 양도	31	양도제한 양수자·채권 범위	시효완성시 양도금지, 재매각제한	대부·신설
		32	채권양도 예정통지	10일전 통지→채무조정신청可	신설
		33	채권양도 절차	양수자선정방법, 사후감독의무	신설
		34	채권양도 내부기준	자율마련→임직원 준수	신설
	채권 추심	35	추심제한 대상채권	채권자변동정보 미등록시 추심금지	신설
		36	추심연락 제한	추심빈도제한, 연락제한요청권	신설
		37	주택경매 예정통지	10일전 통지→채무조정신청可	신설
	추심 위탁	38	추심위탁제한	채무조정권한 위탁제한	신설
		39	추심위탁 예정통지·절차	수탁자선정방법, 사후감독의무	신설
		40	추심위탁 내부기준	자율마련→임직원 준수	신설
		41~43	수탁추심업자·위임직추심 행위제한	-	신정
	채무 조정	44	채무조정요청권	신청시 추심중단·답변의무	신설
		45	채권금융기관의 응답 및 조정성립	내부기준 적합시 수락의무	신설
		46	채무조정 내부기준	자율마련→심사시 적용	신설
47~50		채무조정 교섭업자 업무방법	설명 의무, 이해상충방지, 수수료제한	신설	
소멸	51	소멸시효 완성	기준마련, 채무면제 간주	신설	
감독	협회	52~57	대부금융협회	※신정협회는 신정법 존치	대부
		58·59	대부정책협의회·실태조사	-	대부
	검사·제재·벌칙	60~63, 72·74·75	검사·조치·벌칙	-	대부·신정
		64	등록취소 거래종결	-	대부
		65~67, 76	과징금·과태료	-	대부·신정
		68	손해배상	-	대부·신정
		69	법정손해배상	최대 300만원 법정손해배상	신설
		70	영업보증금적립	영업보증금 외부적립의무	대부
		71·73	권한위임·분쟁조정	-	대부·신정

주: '신정'은 「신용정보법」, '대부'는 「대부업법」에서 각각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 의미(일부 내용수정 有)  
 자료: 금융위원회(2020.9.), 『소비자신용법안』 발표자료

■ 소비자신용의 첫 번째 단계는 대부단계로 기존의 대부업법과 규율내용에 있어 차별화된 변화는 없음

- 대부단계는 기존 「대부업법」에서 다양한 규율들을 도입하고 있어 소비자신용법에서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며 소비자신용법의 새로운 규율 내용은 연체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짐

■ 둘째, 연체단계의 규제내용은 기한이익상실 사전 통지와 연체가산이자 제한에 관한 규율을 새롭게 담고 있음

- 첫째, 연체단계에서는 기한이익상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제함
  - 일반대출 채무자 입장에서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분할상환하거나 천천히 상

환할 수 있었던 채무전액의 기한이 갑자기 도래하고 연체이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채무상황과 연체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장기채무자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소비자신용법안은 금융회사가 연체 등의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10 영업일 이전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을 채권금융회사에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 둘째, 채무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가함

- 그동안 금융기관은 기한이익이 상실됨과 동시에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부담과 별개로 연체 시 종전 이자에 연체가산이자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지속함
- 이러한 이중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채무변제의 유인수단이 되기는커녕, 과중한 부담으로 오히려 더 빠른 다중채무자로 전락할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 초래
- 소비자신용법안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이자부과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연체가산이자는 원래 계약에 따라 상환기한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게 규제하는 방안 제시

### ■ 셋째, 추심단계의 규제내용은 직접 및 위탁추심단계와 매각추심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소비자신용법안은 추심단계에서 금융회사의 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 우선 직접 및 위탁추심 단계와 관련된 규제는 추심규제 강화와 추심위탁 내부기준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심규제강화 : 금융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금지시킴. 또한 채권이 매각된 경우 매입한 추심업자는 반드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권자 변동정보를 등록하여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추심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함. 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한 연락 총량을 제한(주 7회 이하 등)하고, 추심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특정 시간대나 특정 방법, 수단으로 추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나친 추심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추가로 도입한 것임

- 추심위탁 내부기준제도 도입 : 금융기관이 추심을 맡기는 경우 수탁추심업자들이 적절하게 추심하도록 금융기관이 선별 및 감독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는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함. 이를 위해 추심위탁 내부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추심업자를 선별, 감독하도록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음. 나아가 선정뿐 아니라 자신의 고객을 추심하는 수탁, 매입추심업자를 지속 점검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 부여

○ 위탁추심 단계뿐 아니라 매각추심 단계에서도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양도내부제도를 도입함

- 채권양도내부제도 도입 : 금융기관은 금융건전성을 충족하기 위해 채권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에서 추심업자로 바뀌는 만큼 매각추심에 대한 금융기관의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함. 또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을 하게 될 매입추심업자가 다시 제3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어 제3자가 과잉추심을 할 경우에 대비해 재양도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을 입법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양도 후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수많은 채무자들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갈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함

■ 넷째, 채무조정 단계의 규제 내용은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함

- 소비자신용법안의 채무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방향은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채무자와 금융기관 모두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채무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채무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
- 우선 채무조정요청권은 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채무조정요청권의 일반절차(44~46) :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 제안해야 함. 이때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연체기간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 개인채무자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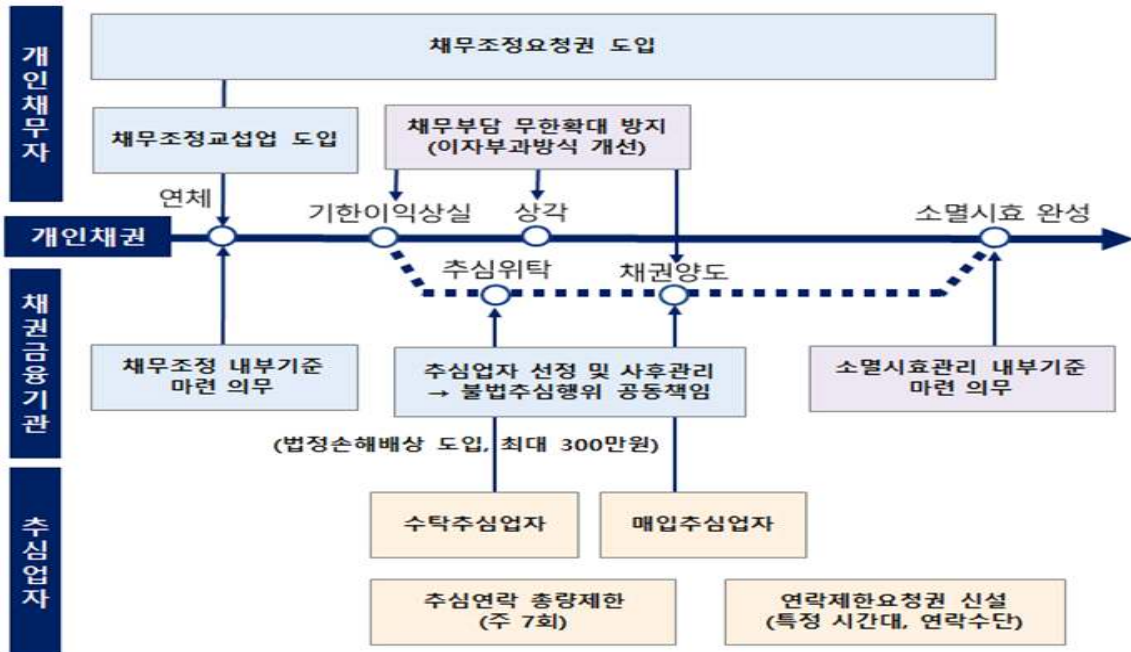
- 채무조정요청권 특별절차(29·32·37) :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 익상실 및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협상하도록 의무화하여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절차진행을 중단해야 함
- 다음으로 채무조정교섭권은 채무조정 협상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으로 금융기관을 상대하기 어려운 불균형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채무조정교섭업자를 별도로 도입하여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채무조정교섭업(9~13, 47~50) : 채무조정교섭업의 주요역할은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 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 가능함. 또한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 채무조정안 상환 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을 부수 업무로 허용
  - 법인 등록제 도입 : 채무조정교섭업을 수행하려는 법인은 자기자본(1천만 원 이상), 영업보증금, 전문성(전문인력 확보, 교육이수), 물적 설비·사회적신용 등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을 엄격하게 규정함
  - 교섭수수료의 엄격한 제한 :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 가능한 수수료 내역 및 수준을 제한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 수취 가능, 기타 개인채무자 피해가능성이 있는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등 규정함

## ■ 소비자신용의 마지막 단계인 소멸시효단계의 주요 규율 내용은 소멸시효 완성과 소멸시효중단에 대한 규정을 도입

-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조차도 채무자가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라도 변제 계획을 내거나 이자 일부를 변제할 경우 이미 사라진 채무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신용법에서는 소멸시효 완성통지 규정을 마련하여 그 이후 더 이상의 추심을 금지시킴.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소멸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음
  - 다음으로 소멸시효중단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실익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중단 기준을 마련, 이에 따라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평가한 후에 시효중단행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다시 말해, 채권금융기관들이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을 설정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고 완성시켜도 좋은 채권을 자체적으로 선별하고 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한 것임

〈그림 2〉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주요 변화



자료: 금융위원회(2020.9.9.). 『소비자신용법안』 보도자료

## Ⅳ 경기도의 대응과제

### ■ 소비자신용법의 기대효과

-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 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연체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와 힘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자신들의 채무에 대한 상환의지 및 책임성 강화
  - 반면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할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안내하여 자신의 고객이기도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하도록 배려 의무를 부과

-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공정성과 상호신뢰성에 기반한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 조정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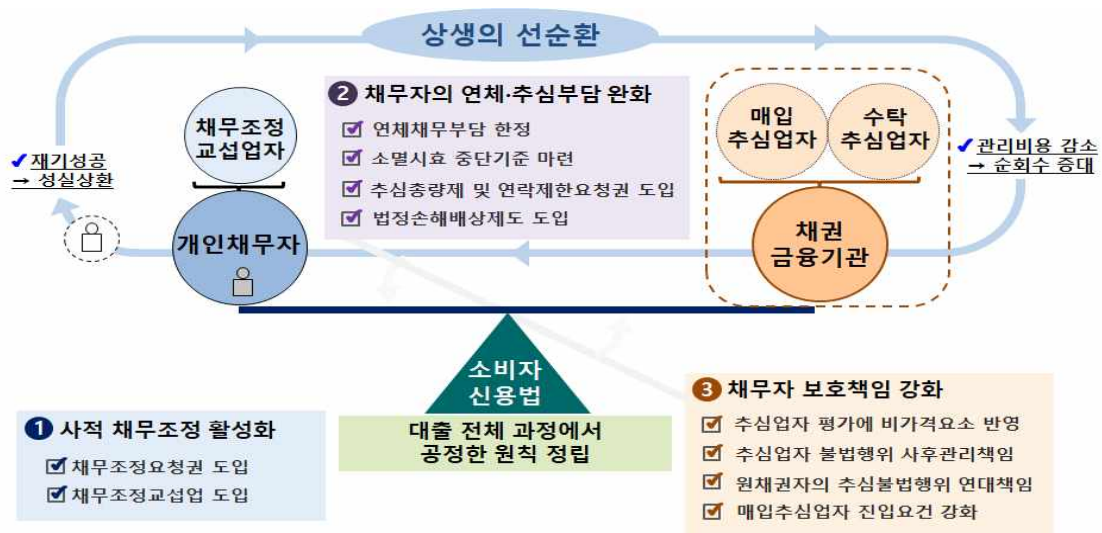
○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
- 또한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감안해 소멸시효 중단기준을 마련해서 시효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의무 부여
- 그 밖에도 추심연락 총량을 제한하고 개인채무자의 연락제한요청권과 법적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영업을 영위하도록 금융기관의 기존 관행에 변화 유도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보호책임 강화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 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
- 선정 후에도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연체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하여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순기능을 기대
- 더구나 채권금융기관도 배임책임에 따른 획일적 추심 전략 대신 회수실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에 임함으로써 중장기적 채권회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

〈그림 3〉 소비자신용법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 금융위원회(2020.9.), 『소비자신용법안』 발표자료

## ■ 경기도의 대응과제

### ○ 첫째,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따른 경기도 관련 조례 제정 검토

- 앞서 채무조정요청권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 지원할 수 있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함
- 채무조정교섭업은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조력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 채무조정안 상환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을 부수 업무로 허용함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채무조정교섭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 법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임. 등록법인의 요건은 자기자본(1천만원 이상), 영업보증금, 전문서(전문인력 확보, 교육이수), 물적 설비·사회적신용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보다 완화된 등록요건 적용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채무조정교섭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수수료 유형, 구체적인 교섭업무의 허용 범위 등을 담고 있는 소비자신용법 도입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과 관련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과제로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기도민 대상으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 요청 및 협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향후 (가칭)서민금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채무조정교섭업 관련 조항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 둘째, 서민금융복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전담, 운영할 수 있는 공공서민금융기관 설립을 통한 채무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의 사적 채무조정 및 협상력 강화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지속. 이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관계는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자와 고객의 관계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 전환 요구
- 경기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민금융복지지원사업 중 채무조정서비스 이용자가 전체 45,165명 중 32,028명(70.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채무조정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장치 미흡
- 현재 경기도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채무조정, 채무협상,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 등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운영, 사적 채무조정 신청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연계, 서류 신청 등 지원

- 하지만 채무범위, 채무대상자의 연체기간, 채무조정 범위, 채권추심의 지원대상 등 현행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까다로운 제약조건과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채무협상 제도의 실효성 미흡으로 정책적 효과는 저조
  - '21년 입법 예고된 소비자신용법안은 기존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지닌 제약조건과 채권자 중심의 일방적 채무조정 한계를 넘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이기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최초의 입법적 장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이에 따라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될 금융시장 및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이 법안의 핵심내용인 사적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협상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서민금융 전담기관을 신속히 설립할 것을 제안함
- 셋째,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채무조정 지원체계 재정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조정단계에서 신설된 채무조정요청권은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줌
  - 이때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미제공시에는 접수를 거부당할 수 있음. 하지만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우 자신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준비 시간도 길게 소요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함
  -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연체 기간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 일정을 내부기준으로 정하더라도 채무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임
  - 이에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조정요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서민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 참고문헌

- 구정한·이규복(2020). 『사적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이규복(2020). 『소비자신용법안의 주요내용 및 의의』. 한국금융연구원.
- 황태희·정소민·권오성·진서진·김승희(2008). 『외국의 소비자신용법 제도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2020.12.15).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발표자료.
- 금융위원회(2020.9.). 『소비자신용법안』. 발표자료.
- 금융위원회(2020.9.9.). 『소비자신용법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9.10.8.).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권리개선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보도자료.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1-04

##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의미와 경기도의 대응과제**

---

발행일 2021년 4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